
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5월 12일

하대동장  **진주시하대동장인**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 *성	김 *성 1994-03-03	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로 (하대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05-12